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군국주의 상징 표시 광고물 배포 금지〉
■ 문금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271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군국주의 상징 표시 광고물 배포 금지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문금주의원 등 14인
2. 발의연월일 : 2024. 7. 2.
3. 회부연월일 : 2024. 7.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6월 6일 현충일, 부산의 한 아파트 주민이 일본의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를 내걸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 발생함. 욱일기로 장식된 차량이 목격되어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였으며, 일부 집회에서는 욱일기를 사용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사태까지 벌어짐.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이 계승하는 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법적으로 엄격히 규제할 필요성이 있음. 특히, 옥외광고물의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며, 공공장소에서의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음.

이에 누구든지 광고물에 깃발, 휘장 및 문양 등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것을 표시하거나 표시한 광고물을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 (안 제5조).

Ⅲ. 검토의견

1. 군국주의 상징 표시 광고물 배포 금지

개정안은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것의 광고물 표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표시한 광고물의 배포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

현행	개정안
제5조(금지광고물등) ① (생략) ② 누구든지 광고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작을 포함한다) <u>하여서는</u> 아니 된다. 1. ~ 5. ¹⁾ (생략) <u><신설></u> 6. (생략)	제5조(금지광고물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하거나 표시한</u> <u>광고물을 배포하여서는</u> -----. 1. ~ 5. (현행과 같음) 6. <u>깃발, 휘장 및 문양 등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것</u> 7. (현행 제6호와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① (생략)

② 누구든지 광고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작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2.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
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른 사행산업의 광고물로서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
5.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한 것

최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戰歿將兵)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偉勳)을 기리는 ‘현충일’에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를 내걸어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이 발생하였으며,²⁾ 욱일기 장식 차량이 목격되고, 일부 집회의 욱일기 사용 등으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며, 공공장소에서의 영향력이 큰 옥외광고물에 군국주의 상징을 표시하거나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여 헌법이 계승하는 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정당성이 심각히 훼손되는 일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함.

다만,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광고물’도 사상·지식·정보 등을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으로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며, 사업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하여 표시·광고하는 것은 영업활동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상업광고를 제한하는 입법의 경우에는 직업의 자유 중 ‘직업수행의 자유’도 동시에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며,³⁾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에 입각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은 **명확성 원칙**이 엄격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음.⁴⁾

2) “현충일에 욱일기 내건 입주민··시민 공분”, 2024.6.6. MBC뉴스

3) 헌법은 제21조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 … 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현대 자유민주주의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으로 언론·출판의 자유를 강력하게 보장하고 있는바, **광고물도 사상·지식·정보 등을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으로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호를 받는 대상이 된다.** 또한, 사업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함에 있어서 그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하여 **표시·광고**하는 것은 영업활동의 중요한 한 부분을 이루고 있으므로, 상업광고를 제한하는 입법은 헌법 제15조의 직업의 자유 중 **직업수행의 자유**도 동시에 제한하게 된다.(헌재 2012. 2. 23, 2009헌마318 중 인용)

4) 법률은 되도록 명확한 용어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은 민주주의·법치주의 원리의 표현으로서 모든 기본권제한입법에 요구되는 것이나,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현대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국민주권주의 이념의 실현에 불

그러나,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군국주의”를 ‘국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군사력에 의한 대외적 발전에 두고, 전쟁과 그 준비를 위한 정책이나 제도를 국민 생활 속에서 최상위에 두려는 이념 또는 그에 따른 정치 체제’로 정의하고 있는데,⁵⁾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나 독일 정권뿐만 아니라 스페인의 프랑코 정권이나 북한정권이 포함되는지 등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깃발, 휘장 및 그 문양”의 경우 상징물 전체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일부라도 포함되면 금지되는지 등 판단주체나 판단방법에 따라서 법적용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자의적인 법 해석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군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821호), 김용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033호), 문금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281호)]가 발의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임(2024.9.23. 상정 및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가결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불명확한 규범에 의한 표현의 자유의 규제는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에 대한 위축효과를 수반하고, 그로 인해 다양한 의견, 견해, 사상의 표출을 가능케 하여 이러한 표현들이 상호 검증될 거치도록 한다는 표현의 자유의 본래의 기능을 상실케 한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헌법적으로 요구된다.(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8헌바157 결정 등)

- 5)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군국주의”란 국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군사력에 의한 대외적 발전에 두고, 전쟁과 그 준비를 위한 정책이나 제도를 국민 생활 속에서 최상위에 두려는 이념 또는 그에 따른 정치 체제. 고대의 로마 제국, 근대의 프로이센 제국, 제1차 세계 대전 때의 독일, 이탈리아, 일본 파위가 대표적인 예이다.

문 의 처
02)6788-5336